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8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김한규·정일영·이용우

한병도 • 박정현 • 고민정

강유정 • 백승아 • 서미화

문정복 • 민병덕 • 이성윤

정준호 · 김종민 · 위성곤

한준호 · 문대림 · 조 국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 적·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 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인구미래부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인구미래부) 인구미래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인구미래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미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인구미래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인구미래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미래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인구미래부장관의 행위 또는 인구미래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 보자(인구미래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미래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구미래부, 인구미래부장관, 인구미래부장관, 인구미래부장관, 인구미래부장관, 인구미래부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20. 인구미래부</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6조(인구미래부) 인구미래부장
	관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
	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